

보도자료는 2015. 12. 3.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전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권오성
전화 042-470-4302 / 팩스 042-470-4222

보도자료
2015. 12. 3.(목)

자료문의 : 특별수사부장실
전화번호 : 042-470-4315
주책임자 : 특별수사부장 이준엽

제목

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

- 대전지검은 지난 3개월간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**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등 국토부 발주 항행안전시설 관련 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** 수사를 진행한 결과,
- 국토부 퇴직공무원 2명으로부터 위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과 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2,400만원 뇌물수수한 **국토부 사무관**, 국가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총 10억여원을 빼돌려 횡령한 **공동연구기관 업체(G社)대표**를 각 구속 기소하고,
- 위 사무관에게 성능적합검사기관 지정관련 청탁한 후 1,400만원 공여하고, 재직 중 직접 관리·감독한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개발사업에 퇴직 후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급여 명목으로 2억원 지급받은 **국토부 퇴직공무원**, 위 사무관에게 1,000만원 공여한 **국토부 퇴직공무원**, 공동연구기관 업체대표와 공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약 8,700만원을 빼돌린 **위 시스템 개발 책임자(F대학교 교수)**를 각 불구속기소함
- 항행안전시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절차, 안전성 검사 및 성능적합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철저한 관리, 감독의 필요성 확인

I

수사 진행 경과

- 2015. 6.말경 : 감사원 수사의뢰
- 2015. 9. - 10. :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,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
- 2015. 10. 30. : G社 대표 E○○ 구속
- 2015. 11. 23. : 국토부 사무관 A○○ 구속
- 2015. 12. 3. : 국토부 전, 현직 공무원, F대학교 교수 등 기소

II

범죄사실 등

- 국토부 ○○과 사무관 A○○(45세,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개발 담당), 구속 기소
 - '13. 5.~'14. 1. 국토부 퇴직공무원인 B○○, C○○로부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과제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지정, 연구개발사업 관련, 편의제공 대가로 **합계 2,400만원을 수수[뇌물수수]**
- 前 국토부 ○○과 서기관 B○○(59세, 무직), 불구속 기소
 - 부하직원이었던 A○○에게 H대학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부정한 청탁하고 **1,400만원 공여[뇌물공여, 공직자윤리법위반]**
 - 재직 중 직접 관리감독하던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, 퇴직 후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급여 명목으로 2억원 지급받음[공직자윤리법위반]
- 前 국토부 ○○과 사무관 C○○(45세, I대학교 조교수), 불구속 기소
 - A○○에게 국토부 발주 연구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1,000만원 제공[뇌물공여]
- F대학교 교수 D○○(63세,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주관 책임자), 불구속 기소
 - E○○와 공모하여, '08.~'13. 항공관제시스템 개발과정에서, 학생 인건비 **6,800만 원을 연구의 용도로 임의소비**하고, 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**1900만원을 편취 [업무상횡령, 사기]**
- G社(항공관제시스템 공동연구기관) 대표 E○○(46세), 구속 기소
 - 위 D○○와 공모범행 이외, 항공관제시스템 등 국토부 항행시설과 발주 연구개발사업 관련, '07.~'14. 거래업체와 짜고 장비구입을 가장하여 연구비 지급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과제의 용도로 소비하는 등 **연구비 총 9억 7,000만원을 횡령**하고,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**4700만원을 편취[특경법위반(횡령), 사기]**

※ 상세한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

Ⅲ

참고사항

○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개요

-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위치 및 항공기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함

※ 연구개발 기간 2007. 12경부터 2014. 9경까지, 연구개발 사업비 약 335억원 규모, 주관연구기관 F대학교, 공동연구기관 G社 등 총 7개 기관

○ 성능적합 검사기관 지정 관련 유착관계

- A○○은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○○로부터 H대학(F대학교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)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수회 청탁받아,

※ 당시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였음

- 성능적합 검사기관지정 심사위원회 1차 위원 대부분이 H대학의 전문성과 검사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적합 판정할 상황이 되자,
- ㉠ 부적합 판정하지 않고 H대학에 보완요구를 하였고, ㉡ 심사위원 10명 중 부적합의견 제시한 6명을 교체하여 2차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 다음, ㉢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H대학의 보완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채, 검사기관 적합 판정을 유도

※ 2015. 11. 19. 국토부는 H대학에 대하여 성능적합 검사기관 지정 취소

○ 항공관제시스템의 인증, 납품 관련 유착관계

- A○○은 소프트웨어 인증전문기관인 T협회에 위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H대학 성능적합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, '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'는 의견을 받고도, 보완여부 확인없이 성능적합판정을 하였음

- 또한 A○○은 2014. 3.경 성능적합 증명검사 합격판정을 받으면 납품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여, F대학교가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편의 제공

※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의2(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)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| 연번 | 성명 | 직업 | 공소사실 요지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1 | A○○ (45세) | 국토부 ○○과 사무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13. 5.~‘14. 1.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, 연구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,400만원 수수[뇌물수수] | 구속 기소 |
| 2 | B○○ (59세) | 무직 (前 국토부 서기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13. 5.~ ‘14. 1. A○○에게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검사 기관 지정, 연구개발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1,400만원 공여[뇌물공여] · 국토부 재직 중 직접 관리감독한 항공시스템개발에 퇴직 후 연구원으로 참여하여,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[공직자윤리법위반] · 국토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소속기관 국토부 사무관 A○○에게 H대학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선정해달라고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[공직자윤리법위반] | 불구속 기소 |
| 3 | C○○ (45세) | I대학교 교수 (前 국토부 사무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13. 9. A○○에게 국토부 발주 연구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1,000만원 공여[뇌물공여] | 불구속 기소 |
| 4 | D○○ (63세) | F대학교 교수 (연구 주책임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E○○과 공모하여 ‘08.~‘13. 4.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과제 인건비를 돌려받아 약 6,800만원 임의 소비[업무상횡령] · E○○과 공모하여 ‘10. 3.~‘10. 11. J대학교 공동과제 관련,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받아 인건비 1,900만원 편취[사기] | 불구속 기소 |
| 5 | E○○ (46세) | G社 (공동 연구기관) 대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D○○과 공모하여 ‘08.~‘13. 4.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과제 인건비 약 6,800만원 횡령[업무상횡령], 인건비 1,900만원 편취[사기] · ‘07~‘14. 항공관제시스템 개발과제 등 관련, 물품 구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약 9억 7,000만원 연구 외 용도로 임의소비[특경법위반(횡령)], · ‘09. 10.경 항전장비개발 관련,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4,700만원 편취[사기] | 구속 기소 |

※ 공소제기 총 5명 (구속기소 2명, 불구속구공판 3명)